4.4.18 연구보안관리 규정

제정 2018.06.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에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계약에 의한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보안 관리책임자 및 보안 관리담당자) 총장은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수행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산학협력단 담당자를 보안관리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로, 산학협력단장을 보안관리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연구과제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

제4조(연구보안관리심의위원회) ①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보안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제5조(보안등급 분류기준) ①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제7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않은 과제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군사 Ⅰ급비밀, 군사 Ⅱ급비밀, 군사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보안등급 분류절차)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신청서를 제출할 때 보안과제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제5조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여 [별표1]의 보안등급 분류기준 점검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② 담당자는 해당 과제의 보안등급 적정성을 확인 후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보안등급의 변경) ① 책임자 및 담당자가 보안등급을 변경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연구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변경내용, 변경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안등급의 변경내용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보안등급의 변경을 철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8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① 책임자, 담당자, 연구책임자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보안과제

가. 외국기업, 국외연구기관에 연구개발과제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외국인의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외국인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그 해당자의 출입제한지역 및 열람가능 자료를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별표2]를 징구하여야 한다.

마. 연구책임자는 연구원의 외국인 접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바. 연구책임자는 연구원에 대한 정기·수시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연구결과물 반출·대외제공·공개 시 연구책임자의 사전승인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 휴대용 정보통신기기, 이메일 등 인터넷서비스 활용과 관련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야 한다.

자. 연구책임자를 변경할 경우 신규 연구책임자의 보안서약서[별표2]를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일반과제는 연구기관별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보고) ① 책임자는 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종합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사고 발생시 처리) ①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조사하여 즉시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보안사고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고 수습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관리 위반시 조치) 책임자는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등의 초지를 취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

제12조(보안관리 의무) 산학협력단장, 보안관리담당자,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및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연구과제 보안등급 분류기준 점검표

번호	보안등급 분류 기준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연구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		
5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거나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 공고하는 기술 연구		
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 여부		
6-1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서 선진국 수준과 동등 또는 우수하고 산업화가 가능한 기술		
6-2	기존제품의 원가절감이나 성능 또는 품질을 현저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6-3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6-4	6-1~4의 산업기술을 응용 또는 활용하는 기술		
7	연구결과물이 소속기관의 중요한 경제적 자산이 되거나, 누설 시 소속 기관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연구		

① 연구개발 과제는 '보안과제' 또는 '일반과제'로 구분합니다.
②『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지침』및『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류 기준으로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여부를 진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는『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지침』및 초당대학교 연구보안관리 규정에 의거 관리하여야 합니다.

최종 점검 결과 :	□ 보안과제	□ 일반과제
※ 상기 점검 결과, 한 가지 항목이라도 "예"가 있을 경우, 보안 과제로 분류		

본인은 위 모든 사항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성명) (인)

초당대학교 총장 귀하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별표2]

보 안 서 약 서

○ **소속(대학, 학과) :**
○ **직명(직위·급, 학년) :**
○ **성명 :** ○ **생년월일 :**
○ **연구과제명 :**

상기 연구과제의 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본교 허락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연구개발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연구개발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본교에 반납하며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본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정보를 누설할 경우 동 과제 참여 제한 및 타 과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또한 그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손해에 대하여 관련 기관 및 본교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인 : (인)

초당대학교 총장 귀하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